

도시관리계획(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56호(2020. 8. 27.)로 결정 고시된 「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강남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결정(변경)취지

- ☐ 도곡공원(매봉산) 이용자를 위해 현재 지형을 고려하여 보행전용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우선 조성하고 향후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건립 시 비상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(공공보행통로 조성 방식 변경)

2. 도시관리계획(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: 게재 생략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: 게재 생략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)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 없음)

나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)

(1) 대지 내 통로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(가)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(변경)

☐ 공공보행통로 결정(변경)조서

(기정)

구 분	적용 위치	계획 내용	비 고
공공보행통로	산6-40	- 폭 4m 이상으로 조성하며 일반이 이용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 - 비상차량의 도곡중학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성	도면표기

(변경)

구 분	적용 위치	계획 내용	비고
공공보행통로	산6-40	- 폭 4m 이상 보행전용으로 조성하며 일반이 이용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 - 비상차량의 도곡중학교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¹⁾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	도면표기

1)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기부채납 시설인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건립으로 인해 기존의 도곡중학교 내부 비상차량 진출입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

☐ 공공보행통로 결정(변경)사유서

위 치	변경 사유
산6-40	- 당초 공공보행통로의 계획내용은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건립 사업의 추진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었으나, 현재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- 이에 따라 일반이 이용 가능한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도 더불어 지연되고 있는 바, 보행 전용의 공공보행통로를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

(나)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: 게재 생략

3. 관련도면(변경 없음): 게재 생략
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(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) 참조

5. 관련서류 열람

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0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